

2018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신입생 모집요강



배화여자대학교
BAEHWHA WOMEN'S UNIVERSITY

□ 산업체위탁교육 안내

산업체위탁교육 제도는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의 총장과 산업체대표의 계약에 의한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과명	모집인원(야간)	비고
공학	스마트IT과	25	3년제
인문사회	비서행정과	22	2년제
	국제무역과	25	
	경 영 과	24	
	세무회계과	19	
	비즈니스중국어과	23	
자연과학	전통조리과	15	
	패션산업과	25	

2.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추가모집 (창구접수)	2017. 12. 21(목) ~ 2018. 2. 27(화)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관련 서류제출	창구 접수 시 제출	방문 제출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전화 통보
등록기간	합격통지서에 기재	농협은행 전국지점

※ 접수처 : 배화여자대학교 교무처 입시팀(본관 1층)

※ 남학생 지원 가능(별도반으로 개설될 경우에 한함)

3. 전형방법 : 산업체 장이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우리대학 총장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한 서류전형

4. 사정기준 : 지원인원이 초과될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가. 별도학급 구성 위탁산업체

나. 現(현) 재직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

다. 재직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

라. 연장자

※ 위 기준 적용 후에 전형순위가 동일할 경우 우리대학 자체 사정기준을 반영함

※ 별도학급 개설이 아닌 야간반과 혼합편성 인원 선발 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함

5. 전형료 : 20,000원

6. 학급편성

가. 학급편성은 25명~30명 단위의 별도학급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인원이 12명에 미달된 경우 별도학급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정규 야간반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모집단위별(주.야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정규 야간반과 혼합편성함 (해당학과 : 전통조리과, 패션산업과)

7. 지원자격

가. 학력 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재직 기준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18학년도 학기개시일 전(2018.02.28)로 함

- 입학일(2018.03.01)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경력 9개월 :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 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018.0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자 공통	1.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고교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2. 재직(경력)증명서 1부 (회사양식 또는 우리대학 양식) 3. 위탁교육의뢰서 1부 (우리대학 양식) 4. 위탁교육계약서 2부 (우리대학 양식) 5.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서류 중 택1 1) 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국민연금공단) 3)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개인사업자	· 4대보험 미 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일반고 위탁직업 교육과정 이수자	·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1부

☞ 원서접수 시 위의 해당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함

9. 유의사항

- 가. 산업체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해야 함
- 나. 우리대학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시설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입학원서 제출 전 교무처에서 상담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함
- 다. 장애수험생의 경우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기관 내에서 보조인력 및 이동용 보장구 제공 가능함 (문의 : 02-397-0546)
- 라.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제출 서류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마.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위탁계약서를 대학에 제출하여야만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
- 바.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타산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음
- 사. 1학기만 남겨 놓고 퇴직한 경우에는「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함
- 아. 합격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 자. 입학할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시홈페이지에서 입학포기 절차에 따라 입학포기원 접수 후 원서에 기재한 환불계좌로 등록금 환불 처리함
- 차.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기개시일 이전에 현 직장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 계약해지로 보아 입학을 취소함
- 카. 입학 이후 매학기(3월, 9월) 재직사실 확인을 위한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등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함**
- 타. 2018학년도 등록금 인상 시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파.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한 자는 **해당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해야 함**

10. 추가 합격자 선발 방법

- 가.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 순으로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추가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 나. 추가합격자는 모집단위 인원의 100%범위 내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
- 다. 추가합격자로 통보 받은 자가 등록의사가 없을 때는 등록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차순위 예비후보로 충원함

11. 추가모집 선발 방법

- 가. 추가합격자 선발 후 예비자원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함
- 나. 추가모집 일정 및 모집인원은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함
- 다. 추가모집 선발은 원서접수 순으로 하며 지원자 개별 등록기간을 부여함

12. 장학금

- 가. 입학 시 입학금 전액 장학 감면 혜택
- 나. 매학기(1학년 2학기~졸업) 200,000원 장학 감면 혜택
- 다. 재학 시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구분	지급기준	지급대상
과수석	수업료의 70%	학과별 최고점수 취득자
성적우수 A	수업료의 50%	학과별 재학인원의 상위 2.5%
성적우수 B	수업료의 30%	학과별 재학인원의 상위 20%

13. 수업시간 : 수업요일(월요일~금요일)/ 수업 시작 시간 : 오후 6시 45분부터

14.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 가.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시홈페이지에서 입학포기 절차에 따라 입학포기원 접수 후 원서에 기재한 환불계좌로 등록금 환불 처리함
 - 입학포기원 신청기간 : 2018. 1. 11(목) ~ 2. 23(금) 16시까지, 이후에는 자퇴 처리됨
- 나. 입시홈페이지"등록포기신청"메뉴 활용
- 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이 불가함
- 라. 환불계좌는 원서 접수 시 작성한 계좌를 원칙으로 함
- 마. 자퇴처리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6조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적용함

사유발생 시기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15. 전형료 환불 및 반환

- 가. 원서접수 이후(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접수된 서류, 원서접수 수수료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단,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나. 전형료 수입 대비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형료를 납부한 수험생에게 해당 학년도 4월 30일 까지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입학전형료 반환 시 반환 대상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계좌이체 시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료 반환 시 입학원서 상의 계좌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는 원서상의 계좌번호를 유지하기 바람

16. 입학상담 및 문의사항

- 입학상담 및 문의사항 : 교무처 (02) 397-0541~2 / 팩스(02) 737-7260
- 주 소 :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 배화여자대학교 본관 1층 교무처
(원서 및 각종서식은 www.baewha.ac.k/ipsi 입시홈페이지/입시도우미/지원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